

□ KARA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 신·구 대비표(2020 vs 2021)

2020년	2021년
제2장 국내스포츠규정	
<p>제4조 경기 조직</p> <p><전략> ...</p> <p>제4.21조 참가접수 명단의 공포</p> <p>대회주최자는 공식 참가접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경기참가팀, 선수의 이름을 공식 프로그램에 넣어 공포하면 안 된다. 더구나 조건부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그 점을 기재하여야 한다. 참가접수 명단의 발표는 참가 신청 마감일 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 경기 조직</p> <p><전략> ...</p> <p>제4.21조 참가접수 명단의 공포</p> <p>대회주최자는 공식 참가접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경기참가팀, 선수의 이름을 공식 프로그램에 넣어 공포하면 안 된다. 더구나 조건부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그 점을 기재하여야 한다. 참가접수 명단의 발표는 참가 신청 마감일 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하여야 한다.</p> <p>제4.22조 드라이버의 가명 사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라이선스를 가명으로 등록하려면 KARA 에 특별신청을 해야 한다. 2. 라이선스는 가명으로 발급될 수 있으나, 한 사람이 두 개의 가명을 사용할 수 없다. 3. 이 경우 승인되었다면 라이선스는 그 가명으로 발급된다. 4. 가명으로 등록된 라이선스 보유자는 모든 경기에서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. 5. 가명을 바꾸려면 원래의 이름을 바꿀 때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.

<p>제4.22조 조건부 참가 승인 참가자가 본 규정 제4.19조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선정이 있을 경우 주최자의 동의를 얻어 조건부 참가접수가 인정된다.</p> <p>제4.23조 동일 차량의 중복 참가 한대의 차량으로 하나의 경기에 한번만 참가신청이 허용되나 KARA가 본 규정의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복출장이 가능하다. 단, 챔피언십 경기는 동일 선수로 운전하면 안 된다</p>	<p>6. 가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명 또는 다른 가명으로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을 때까지 변경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</p> <p>제4.23조 조건부 참가 승인 참가자가 본 규정 제4.19조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선정이 있을 경우 주최자의 동의를 얻어 조건부 참가접수가 인정된다.</p> <p>제4.24조 동일 차량의 중복 참가 한대의 차량으로 하나의 경기에 한번만 참가신청이 허용되나 KARA가 본 규정의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복출장이 가능하다. 단, 챔피언십 경기는 동일 선수로 운전하면 안 된다</p>
<p>제9조 자동차 <전략> ...</p> <p>제9.4조 자동차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정한 자동차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KARA 또는 FIA는 경기 참가자, 선수,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본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특정한 자동차를 출장 정지,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할 수 있다. 자동차모델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KARA는 경기 참가자, 선수,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본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특정한 자동차 모델을 출장 정지,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할 수 있다. 국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스포츠규정을 따른다. 	<p>제9조 자동차 <전략> ...</p> <p>제9.4조 자동차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정한 자동차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KARA 또는 FIA는 경기 참가자, 선수,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본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특정한 자동차를 출장 정지,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할 수 있다. 자동차모델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KARA는 경기 참가자, 선수,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본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특정한 자동차 모델을 출장 정지,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할 수 있다. 국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스포츠규정을 따른다.

<p>제9.5조 차량에 붙이는 광고 KARA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적용하는 특별조건을 규정하여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9.6조 허위 광고 경기참가자나 단체가 경기나 기록의 광고를 할 경우는 발표된 성적의 일반조건과 특별조건, 경기와 기록의 성질, 차량의 분류, 클래스 구분, 취득한 성적을 명시하여야 한다. 대중에게 이의를 갖게 하는 성질이나 과대광고는 그 광고의 해당 경기참가자나 단체에 대하여 본 규정 제11조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.</p>	<p>제9.5조 차량 의무 검사 규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참가 차량은 공식 연습 시작 전까지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. 차량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. 심사위원회와 기술위원장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. 경기 중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경기장에서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외부에서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완료 후 재검사를 통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.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페널티가 부여되며 실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. <p>제9.6조 차량에 붙이는 광고 KARA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적용하는 특별조건을 규정하여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9.7조 허위 광고 경기참가자나 단체가 경기나 기록의 광고를 할 경우는 발표된 성적의 일반조건과 특별조건, 경기와 기록의 성질, 차량의 분류, 클래스 구분, 취득한 성적을 명시하여야 한다. 대중에게 이의를 갖게 하는 성질이나 과대광고는 그 광고의 해당 경기참가자나 단체에 대하여 본 규정 제11조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.</p>
<p>제12조 항의 <전략> ...</p>	<p>제12조 항의 <전략> ...</p>

<p>제12.5조 접수할 수 없는 항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실판단관(Judges of fact)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 2. 이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 반복하지 않는 한 최종결정이지만, 해당 선수가 어떤 조건에서 코스를 완주했는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정만으로 순위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. 3. 두 명 이상의 경기 참가자를 상대로 한 단일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 4. 여러 경기 참가자가 공동으로 제기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 	<p>제12.5조 접수할 수 없는 항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실판단관(Judges of fact)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 2. 이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 반복하지 않는 한 최종결정이지만, 해당 선수가 어떤 조건에서 코스를 완주했는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정만으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. 3. 두 명 이상의 경기 참가자를 상대로 한 단일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 4. 여러 경기 참가자가 공동으로 제기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
<p>제12.6조 결과 발표 및 시상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항의 대상이 된 경기참가 팀, 선수에 대한 시상은 항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한다. 2. 항의 결과가 경기 순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잠정 순위만 발표할 수 있으며, 모든 시상은 항의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진행한다. 3. 그러나 항의가 순위의 일부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에는 항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상도 가능하다. 	<p>제 12.6 조 포상과 시상 발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항의 제기 대상이 된 경기 참가자가 획득한 포상은 그 항의에 대한 결정이 내려 질 때까지 보류한다. 2. 경기의 순위를 바꿀 수 있는 항의가 제기된 경우 주최자는 잠정 순위 결과로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포상은 그 항의(항소를 포함하여)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보류한다. 3. 그러나 항의가 순위의 일부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에는 항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확정으로 발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상이 수여될 수 있다.
<p>제13조 항소</p> <p>제13.1조 권한의 범위</p> <p>KARA는 국내 항소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모터스포츠와 관련해서 KARA</p>	<p>제13조 항소</p> <p>제 13.1 조 권한의 범위</p> <p>KARA는 국내 항소 제도를 마련하고 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경기참가자의</p>

회원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항소위원회를 구성한다.	항소권을 보장한다.
제4장 팀 등록규정	
<p>제12조 권한</p> <p>공인팀으로 등록한 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</p> <p>12.1 공인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팀으로서의 기록이 인정된다.</p> <p>12.2 공인 팀으로서의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12.3 영구등록팀은 선수 라이선스 국내 C와 B 유자격자를 추천할 수 있고, 단기등록팀은 선수 라이선스 국내 C 유자격자를 추천할 수 있다.</p> <p>12.4 프로그램 북 등 공식적인 팀 명 노출이 가능하다.</p>	<p>제12조 권한</p> <p>공인팀으로 등록한 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.</p> <p>12.1 공인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팀으로서의 기록이 인정된다.</p> <p>12.2 공인 팀으로서의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12.3 영구등록팀은 선수 레이스 라이선스 국내 B 이하의 유자격자를 추천할 수 있다. 레이스 B 등급 추천의 경우 대상자가 반드시 레이스 C 라이선스 소지자여야 한다.</p> <p>단기등록팀은 선수 레이스 라이선스 국내 C 이하의 유자격자를 추천할 수 있다(모든 추천은 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드래그 및 드리프트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).</p> <p>12.4 팀의 추천에 의해 라이선스 발급이 된 선수가 1년 이내에 경기 운영능력 부족으로 중대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여 페널티를 받은 경우 해당 팀은 3년간 추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</p> <p>12.5 프로그램 북 등 공식적인 팀 명 노출이 가능하다.</p>
제5장 선수 등록규정	
<p>제2조 선수 라이선스</p> <p>2.2.1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자는 국내의 도로교통법에 의한 '2종 보통'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국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소지자이어야 한다. (단, 국내 Junior 라이선스는 예외로</p>	<p>제2조 선수 라이선스</p> <p>2.2.1 선수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자는 국내의 도로 교통법에 의한 '2종보통'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국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이어야 한다. (단, 등록 말소된 차량 및 포물러 등</p>

<p>한다)</p>	<p>경주전용차량으로 시합하는 클래스 참가에 한해 운전면허증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. 이 조건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번호판이 있는 등록 차량으로 진행되는 경기에 출전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)</p>
<p>2.2.3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의 연령 제한은 만 19세 이상으로 한다. 만 19세 미만의 경우 KARA의 '법정보호자 동의서'를 작성하여 KARA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2.2.3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의 연령 제한은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. 18세 미만의 경우 KARA의 '법정대리인 동의서'를 작성하여 KARA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